

의안번호	제3100호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6. 4. 24.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00호
----------	--------

제출연월일: 2026. 4. 24.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고,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규정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며,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안 제명)
- 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각각 변경(안 제1조~제16조)
- 다.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4조, 제8조 및 제9조)
- 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 반영(안 제10조제1항제3호)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9392(2026. 2. 27.)호]

라. 기 타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3. 3.~2026. 3. 23.(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의”를 “녹색제품의”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1.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누리집 또는 군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1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을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정보제공)”을 “(녹색제품 정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을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6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행)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16조 관련)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경리부서, 건설부서, 기관(제4조의 기관)에서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경리부서, 건설부서, 기관에서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경리부서 :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
업소 포함)계획 수립 및 실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
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
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지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별표 1】 삭제 <0000. 00. 00.>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 사무분장(제16조 관련)

환경 부서	<p>녹색제품 생산·구매촉진 시책 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 부서, 건설 부서, 산하 기관장이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 부서, 건설 부서, 기관에서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관리 및 보고(도지사) ○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구매촉진 시책 수립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 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회계 부서	<p>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 실적을 환경 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 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면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 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환경친화적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건설 부서	<p>환경친화적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환경친화적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환경친화적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지방서 개정 등 환경친화적 건설자재류 구매촉진 실적 포함 ○ 건설 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u></p>	<p><u>고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u>친환경상품의</u>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친환경상품</u>”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p> <p>2. (생략)</p> <p>3. “<u>자발적 협약</u>”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p>	<p>제1조(목적) ----- 「<u>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u>」----- ----- ----- ----- <u>녹색제품의</u> ----- -----.</p> <p>제2조(정의) ----- ----- -----.</p> <p>1. “<u>녹색제품</u>”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 ----- ----- <u>녹</u></p>

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
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청
2. 고성군의회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
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
개발 및 판매지원

색제품-----

-----.

<삭 제>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

녹색제품-----
--- 녹색제품-----

-----.

②-----
-----.

1. 녹색제품 -----

2. 녹색제품 -----

3. ----- 녹색제품 -----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을 위한 홍보 등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
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
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
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
매목표를 등 친환경상품 구매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
의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
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4. --- 녹색제품 -----

5. ---- 녹색제품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하고, 군 누리집 또는 군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 녹색제품 -----

-----.

1. 녹색제품-----

--

2. 녹색제품 -----

3. -----
----- 녹
색제품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

리)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 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9조 각 호의 구매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

--- 녹색제품 -----

-----.

1. 녹색제품 -----

2. 녹색제품 -----

3. 녹색제품 -----

4. 녹색제품 -----

② 녹색제품-----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 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삭 제>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2. (생략)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생략)

②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녹색제품-----
 ----- 녹색제품 -----

 --.

- 1.·2. (현행과 같음)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4. (현행과 같음)

②-----
 ----- 녹색제품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녹색제품 -----

다.

제11조(교육훈련) 군수는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
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
행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
판매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상
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
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
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 사
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
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
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
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

--.

제11조(교육훈련) ----- 녹색제품

-----.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
매지원) ① ----- 녹색제품-

-----.

② -----
녹색제품-----

-----.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
----- 녹색제품-----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

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 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조(사무분장)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업) ① -----

녹색제품-----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녹색제품 -----

-----.

③ ----- 녹색제

품-----

-----.

제15조(포상) ① ----- 녹색제품-----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무분장) 녹색제품-----

별표와 -----.

<삭 제>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

작성자: 환경과장 최 정 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09. 4. 1., 2010. 1. 13., 2011. 4. 5., 2021. 9. 24.>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②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③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제목개정 2011. 4. 5.]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1. 4. 5.]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25. 10. 1.>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2. 2. 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5. 10. 1.>

[제목개정 2011. 4. 5.]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1. 4. 5.]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목개정 2011. 4. 5.]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15. 3. 30., 2024. 2.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관
6. 다음 각 목의 법인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나.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라.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전문개정 2012. 7. 31.]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 7. 31.]